

(별첨 1)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6조의 5(입학 자격) ① ... ② 신학석사(Th.M.)과정: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목회학석사(M.Div.)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③ ... ④ 철학박사(Ph.D.)과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목회학석사(M.Div.)과정을 졸업한 신학석사(Th.M.) 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문학석사(M.A.) 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문학석사(M.A.) 학위 소지자는 성경, 상담, 사회복자 전공에만 자원이 가능하며, 동일 전공이 아닌 경우 본교에서 지정하는 특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0.09.24. 개정)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6조의 5(입학 자격) ① ... ② 신학석사(Th.M.)과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목회학석사(M.Div.)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에서 신학관련 문학석사(M.A.) 학위를 취득한 자 ③ ... ④ 철학박사(Ph.D.)과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목회학석사(M.Div.)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신학석사(Th.M.) 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상담학 문학석사(M.A.) 학위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단, 동일과정에만 지원할 수 있다.	